코로나-19 감염예방을 위한 실습학생 관리 안내

2022. 6. 27.(월) 기준

코로나19의 감염증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각 대학에서는 실습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실습 전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실습 금지 대상

- 1.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
- 2. 코로나 의심증상(발열(37.5도 이상), 인후통, 기침 가래 등)이 있는 자
- 주요임상증상: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 실 또는 폐렴 등

* 역학적 연관성 (역학적 연관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- 실습일 기준 1주 이내 동거인, 동거가족이 확진된 경우
- 실습일 기준 1주 이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

(*밀접접촉: 확진자와 식사·음료섭취·15분 이상 마스크 없이 대화한 경우)

실습 허용 기준

- 1. 최초 실습시
 - 시작일 기준 3일(72시간)이내 코로나19 PCR검사 시행 음성 확인 후 실습 허용
 - ① 45일이내 확진이력이 있는 경우: 검사 제외이나 유증상자의 경우 폐렴소견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 실습 허용
 - ② 46일~89일이내 확진이력이 있는 경우: 무증상/7일이내 확진자 접촉력 없는 경우에는 검사제외, 유증상/7일이내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시행
- 2. 7일이상 실습 중단 후 실습 재개 시
 -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실습 허용 (단, 부산대학교병원은 동일 기관 실습(연속실습)으로 인정)
- 3. 코로나19 확진 후 해제된 경우
 - 무증상자: 격리 해제 익일(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)부터 실습 가능
 - 유증상자: 폐렴소견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 실습 허용
- 4.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
 - (1차) 신속항원검사 음성일 경우 → (2차) PCR검사 음성 확인 후 허용
- 5. 확진자가 속한 실습조원 및 역학적 연관성 있는 학생의 경우

- 무증상자: 조원 확진 인지 시 PCR 검사 시행, 음성 확인 후 실습 가능

- 유증상자: 4번과 동일

실습 금지 부서

구분	해당부서	비고
<u>금지</u> 부서	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병동, 코로나19 선제격리병동, PICU, PNICU, 조혈모세포 이식실, 항암전용병동(45A)병동	
<u>제한</u> 부서	분만실,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	일부 허용

실습학생 지도사항

각 학교에서는 실습금지 및 허용 기준을 잘 확인하여 주시고, 실습학생들을 빈틈없이 관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

- 1. 실습기간 중 발열(37.5도 이상)이나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실습을 중단하고 귀가함 (* 신속항원검사 시행)
- 2. 병원구역 내 실내/실외에서 <u>마스크는 KF94 이상을 착용</u>하도록 함. (탈의실에서도 필수 착용)
- 3. 실습 중 <u>손위생을 반드시 준수</u>하도록 지도함
- 4. 실습기간 동안 각종 단체모임,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(집회활동, 목욕탕, 헬스장, 미용실, 찜질방, 영화관, PC방, 종교활동 등) 방문 자제
- 5. 실습기간동안 가족이나 지인(친척 등) 중 해외 입국자와의 만남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
- 6. 실습생이 병원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<u>즉시 해당 학기의 실습을 중단</u>함 (One strike out 제도)
- ▶ 실습부서에서 권고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 - ※ KF94 마스크 권고 부서: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와 대면하는 부서로 호흡기내과 병동, 이비인후과 병동
- ▶ 원내에서 또는 환자보호자 내원객 및 병원직원 대면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 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황이 관찰된 경우
- ▶ 손위생이 필요한 순간에 손위생을 누락한 경우
- ▶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확진자, 자가격리대상자 또는 검사대상자가 되었으나 그 사실을 병원측에 지연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

실습운영 변경 및 제한사항(간호학생)

- 1. 컨퍼런스 제한
 - 원내 컨퍼런스룸 제공 불가
 - 밀폐된 장소에서의 모임 및 집체교육 금지
 - 컨퍼런스는 교내에서 실시하거나 대체 방안 마련
- 2. 점심시간 식당의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식사 시간을 조정 (11:00~12:00, 13:00~14:30에 인원을 분배하여 식사, 직원 식사 시간을 피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조정, 식사 중 대화 금지)
- 3. 원내 실습지도 제한(상황 종료 시까지)

실습 시 주의사항

- 1.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또는 호흡기증상을 가진 환자와의 접촉 금지(병실 출입 금지, 검사실 동반 등)
- 2.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를 시행하거나 참관하는 것 금지
 - ※ 에어로졸 생성 처치: 기관지경 검사, Intubation(수술환자에게 시행하는 것도 포함), 호흡재활치료, 흡인 등
- 3. 위 사항에 대한 근거
 - SARS 유행 시 기관지경 검사를 견학하던 의과대학생에서 SARS가 감염된 사례가 있음 → 따라서 에어로졸 생성 처치에는 견학, 같은 공간에 있는 동석,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행위를 금함
 - 현재 의료기관에 N95 마스크를 비롯한 모든 마스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
- 실습학생 관리가 누락되거나 거짓 보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은 학교에 있음
 - ※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(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) 감염병에 관하여「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(內院)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,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、은폐하여서는 아니 된 다. 이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출입구 제한운영 안내

- 1. 출입구가 제한적으로 운영되오니 실습학생들이 미리 출입 가능한 입구를 확인 후 실습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
- 2. 출입 시 실습생 명찰 제시
- 3. 이용가능 출입구 (총 3개소)
 - 중앙진료동 주출입구 (중앙 메인로비, 24시간 이용가능)
 - 어린이병원 주출입구 (어병 로비, 24시간 이용가능)
 - 재활병원 주출입구 (재활병원 로비, 평일 06~20시 이용가능)



● 출입구 통제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

환자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하여 건물별 출입구를 폐쇄합니다.

- 🤎 이용 가능 출입구
 - 폐쇄 출입구

